

「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공공위탁  
동의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1월 5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1월 6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1월 14일

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첨단산업국장 남 병 국

나. 제안이유

-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지역 센서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센서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-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의 전문적,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1) 사무명 :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
- 2) 추진근거 및 필요성
  - 가) 추진근거
    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   - (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    - (3) 「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
    - (4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  - 나) 필요성 : 센서 기술 관련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센서 산업 관련 축적된 전문성을 지닌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
- 3) 위탁 사무 내용 :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업무 전반
  - 가) 서비스 로봇용 센서 및 제어기술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 확보
  - 나) 센서산업 기업 대상 기업협의체 조성 및 운영
  - 다) 시제품 제작지원, 기술지원 등
- 4)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- 5) 위탁기간 : 2026. 1. ~ 2026. 12.
- 6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400백만원(도비 120, 시비 280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간접비	사업비	비고
400	80	17	303	

- 7)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( '25.12.31.)
- 8)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)
- 9) 부서의견

- 가)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센서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지원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을 2024~2025년 동안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왔음
- 나) 앞으로도 성공적인 사업수행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해당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 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  - 「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
  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-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  - : 적정(2025년 구미시 반도체방산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-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  - 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1.1. 시행)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- 본 동의안은
  - 첨단 스마트센서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기술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기업 대상 협의체 조성·운영을 기술력과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, 센서관련 산업은 미래첨단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, 지원 실적이 2024년도 4건에서, 2025년도에 8건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, 관련 기술과 노하우의 축적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.
- 관련부서에서는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철저한 평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

- 시제품 제작의 유형·규모·난이도 등 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, 지원에 따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관리·감독과 성과 점검 체계 강화가 필요함.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